

합성부터 시작한 우리 화석산업(5)

2. 증설한도와 시설능력

2.1. 일산 30톤의 의미

비닐론, 나일론, 레이온, 아크릴 등 각가지 화학섬유가 국내에서 생산됨을 계기로 먼저 내수에서 수입품의 자리를 메워가면서, 한발 앞서 생산을 시작한 품목은 수출용 수요(수출품목 제조에 쓰이는 재료)에 기여(寄與)하기에까지 이르러 화학섬유의 수요가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 갔다. 이렇게 되자 파일렛 플랜트를 겨우 면한 초기 시설을 국제경영규모(일산 30톤)로 확장하려는 각 사의 증설의욕이 뜨겁게 달아오르는가 하면 새로이 참여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여러 곳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 부분에서 추진 중인 경제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외국차관(借款)은 당시의 국내여건에 비추어 쉽게 그 제공자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리를 붙여 상환해야 하는 말 그대로의 외채(外債)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시대상황에서, 기업이 원한다고 공급과잉이 명확한 모든 신 증설을 정부가 다 인가해 줄 수는 없는 일이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되도록 신 증설을 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계획을 감안한 화섬 각 품목의 당해 년도 증설한도를 책정한 다음, 희망기업들의 조건을 평가하여 각 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화학섬유 제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裝置産業)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규모의 이(利, scale merit)를 볼 수 있으므로 각 기업들은 서로 먼저 증설한도를 배정 받아 설비를 확장하기를 바랐다. 마침 이 무렵(60년대 중반)에 발표된 ECAFE(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 UN의 하부조직)

보고서는 ‘초기의 소규모시설은 국제 경영단위(일산 30톤)에 달한 화섬시설에 비해 생산요소비용이 2배 가까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계의 증설의욕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 위에 수출용 원자재로의 공급길이 열리면서 부딪치게 되는 수입 원자재와의 원가경쟁에서 맛보는 쓰라림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단위공장의 규모확대는 각 사의 지상과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각 사는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지불해야하는 기술료, 내·외자의 금리, 원료수입에 따른 원가료(原價高)등의 핸디캡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에서 그 나머지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 것이다. 표 2.1에서 보듯이, 기술은 차지하고라도 우선 생산규모면에서 일본보다 이렇게 작아서는 가격 경쟁이 될 수가 없었다.

표 2.1 일본과의 시설능력 비교 (1971년)

품 목	국명	전체능력	평균능력	최대규모	최소규모
나일론F	한국	68.2	22.7	28.4	16.1
	일본	870.0	145.0	291.0	102.0
	대비	1:13	1:64	1:12	1:6
폴리에스테르 F	한국	45.0	7.5	21.0	1.0
	일본	552.0	70.0	126.0	40.0
	대비	1:12	1:9	1:6	1:40
폴리에스테르 SF	한국	20.0	10.0	12.0	8.0
	일본	652.0	94.0	155.0	40.0
	대비	1:13	1:9	1:13	1:5
아크릴 S	한국	73.5	36.7	58.5	15.0

	일본	967.0	145.0	183.0	63.0
	대비	1:13	1:4	1:3	1:4

소규모의 수입대체 산업 형태에서 수출 지원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위의 영세성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여 적정 양산체제를 갖추는 것이 각 기업의 염원이었다. 한편 설치 허가권자인 정부는 시설과잉에서 오는 과당경쟁을 막고 수급 및 수출계획을 감안하여 여러 업체에게 산발적으로 시설설치를 허가하기 보다는 일관성 있는 육성책을 지속적으로 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잡음도 있었는데, 1969년 기존 3개 공장 외에 제4의 신규 30톤 미만의 나일론 공장 설치허가권이 나왔을 때 기존 3사가, 내수용 수요를 이미 충족시키고 수출로 전환하기 위해 국제경쟁 가능규모로의 증설을 추진 중인데, 국제경영규모(일산 30톤)에도 미달하는 또 하나의 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를 부실화 시킨다고 반발하자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 된 일이 있었고, 그 뒤 70년 말 폴리에스테르 SF 일산 25톤 설치허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계는 이를 소화할 방적 및 직포시설 설치와 면혼방직물(P/C)의 대체 계획이 동시 또는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저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업체가 우선 일산 30톤 이상의 규모로 크기 위해 신규 참여에 제동을 걸면서, 내부적으로도 동업자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증설 경합을 펼쳐왔다.

이런 와중에도 1968년 8월 8일 한일합섬이 1차 증설(일산 25톤)을 마치고 일산 32.5톤 공장을 가동시키자 당시의 신문은 ‘한국 화섬공업의 일획을 긋는 경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하튼 화섬공장의 ‘일산 30톤’이라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던가 하는 것은 상공부의 ‘1970년도 섬유공업시책’ 첫머리에 실린 다음과 같

은 기록에서도 유추할 수가 있을 것이다.

1970년도 섬유공업시책

一. 섬유산업의 합리화 추진

1. 시설의 합리화

가. 단위공장의 적정 규모화

(1) 시설의 적정규모(국제규모)

인조섬유 30톤/일

(2) 신규허가

국제규모 이상에 한하여 수요의 범위내에서 허가

(3) 증설

국제규모가 되도록 육성

나. -----

2.2. 섬유공업 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법

신·증설을 둘러싼 혼선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다. 1967년 3월 3일 법률 제1906호로 공포되었으나 동 시행령 (1968년 11월 7일 공포) 및 동 시행규칙 (1969년 1월 14일 공포)의 제정이 늦어져 제기능을 못하다가, 1970년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법 제16조에 의한 섬유공업심의회가 구성되고, 동 심의회에 의해 섬유공업시설 설치허가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서 과열현상은 진정되어 갔다.

이렇게 법체계가 완성되자 모든 섬유공업 시설은 동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69년 6월 말까지 관계 단체 및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상공부에 등록하게 되었다. 상공부는 이 등록된 시설의 수 또는 능력과 수급상황

및 수출계획을 감안하여 시설조정계획을 작성하고(법 제6조), 이 계획에 따라 그 해에 새로 설치(증설 포함) 할 수 있는 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를 책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할 시설기준 및 허가의 우선순위는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졌다(법 제7조).

예컨대 1970년 4월 10일 개최된 첫 섬유공업심의회에서 심의 작성한 70년도 섬유공업시설 설치허가 원칙은 다음과 같다.

70년도 섬유공업시설 설치허가 원칙

(가) 허가 한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70년도 중에 시설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한도 및 그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허가 한다.

(나) 설치 기준 (법 제17조)

(1) 1969년 이후에 제작된 기기로서 현 기술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이라야 한다.

(2) 시설별 성능과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 허가 우선순위 (법7조)

(1) 증설용은 신설에 우선한다.

(기존공장은 적정 규모까지 육성하고,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신설은 억제한다.)

(2) 수출실적 및 전망이 양호한 것이 우선한다.

(3) 경제성 (차관조건, 톤당 시설비)이 유리한 것이 우선한다.

(라) 허가조건

A. 국내제작인 경우

1. 상공부장관의 설치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제작 계약을 체결

하고 6개월 이내에 제작 완료하여 시설을 인도 받아야 한다.

2. 시설설치 완료 후 지체없이 당부(當部)에 등록하여야 한다.

심의회가 설치허가 우선 순위에서 수출용을 우선토록 정함에 따라 71년부터 허가한도도 수출용 설비에 치우쳐 책정되게 되고 그리하여 화성공업은 자연히 수출산업으로 변신해 갔다.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지상주의가 풍미하던 때이므로 화성제조용 시설재는 관세면제의 혜택(관세법 제28조 1항 1조)을 받았으며, 섬유수출은 해마다 크게 신장되어 갔으므로 이에 따라 화성의 수출용 수요도 자연히 증가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화성 생산능력도 계속 확대되어 갔다.

1966년 일산 20톤이던 생산능력이 70년을 전후한 2~3년 동안에 급격히 확대되어 71년 말에는 일산 258.2톤으로 무려 13배나 커지자 업계 내부에서 자성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일정기간 과열을 식히고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미국의 섬유류 수입규제나 오일 쇼크의 영향 등 해유향장의 변화와 국내 관련 업종의 동태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증설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증설도 공장별 마스타 플랜을 세워놓지 않고서 매년 공급부족분(때로는 1개 생산라인의 적정 생산용량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만을 몇 개 사에 안배하여 증설케 하는 것은, 그 한 공장을 마침내 일산 30톤이 넘는 규모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산 3톤, 5톤, 10톤, 15톤 식으로 누덕누덕 덧붙인 이 공장의 생산성이 일산 15톤에 18톤을 합친 공장이나 한꺼번에 33톤으로 세운 공장의 생산성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1970년 10월에 실시된 전체시설 조사결과(변경등록으로 시설능력 현실화됨)에서 감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 증설 체제가 그런대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

이 당시의 섬유공업 심의회의 심의 위원은 표 2.2와 같다.

표 2.2 섬유공업심의회 심의위원

위 원 장	상공부장관
위 원	경제기획원 기획담당차관보
〃	재무부 이재담당차관보
〃	상공부 (관공전담당)차관보
〃	상공부 (상역담당)차관보
〃	상공부 공업 제1국장
〃	상공부 공업 제2국장
〃	상공부 상역국장
〃	국립공업연구소장
〃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	중소기업은행장
〃	한국외환은행장
〃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	한국화학섬유공업협회 회장
〃	대한방모공업협회 회장
〃	대한방직협회 회장
〃	한국소모방협회 회장
〃	한국포리에스텔섬유공업협회 회장
〃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대한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한국보세가공품수출협회 회장

〃	한국타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김문상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우범식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장석윤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장	
〃	한국생산성본부 이사장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